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인훈련계획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상담원과 합의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해당되는 곳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방법	훈련기간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특화)Avionics 고장탐구기술자 향상	항공기정비 (150903)	집체 훈련	21.08.09~21.08.13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3.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합니다.
 -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
4.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소득 및 매출액)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0.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참여가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12. 훈련생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1.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3.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4.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6.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과정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준용

<기타안내>

-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 2. **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체크는 훈련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서명 또는 인)